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은혜·구자근

김종양 • 백종헌 • 임종득

정희용 · 신성범 · 주진우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, 전시·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, 유족 연금,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 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 0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전사자・순직자 및 전투	제30조(전사자・순직자 및 전투
유공자의 진급) ① ~ ③ (생	유공자의 진급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
	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
	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
	<u>서 한다.</u>